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4-177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별계획구역1
(진흥아파트부지) 세부개발계획] 및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이면없음>											
공 람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서 초 구

※ 이 구보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http://www.seochu.go.kr>-열린구청-행정정보-서초전자구보)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4-17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둔 조문을 개정하여 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부조리 신고보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고기한 정비 및 예외 규정의 근거 법령 명시(안 제4조)

- 신고 기한을「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변경
- 「형법」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조리 행위는 신고기한을「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

나.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정비(안 제6조, 별지 서식)

- 신고인 인적사항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및 직업, 근무처 수집 규정 삭제

다. 피신고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 근거를 상위 법령으로 정비(안 제13조)

- 징계 근거를「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으로 변경

라.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 2)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 3)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 4) 「형법」제129조, 제130조, 제132조
-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조 례 안 : 별첨
- 2) 입법예고 : 2024. 08. 16. ~ 2024. 09. 05. (20일)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 4) 부패영향 평가 : 심사 후 반영

5) 성별영향 평가 : 심사 후 반영

6)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aggi55@seocho.go.kr

2) 주소 :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 4층 감사담당관

3) 팩스 : 02)2155-61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02-2155-6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 ‘입법예고’ 란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현하는데**”를 “**구현하는 데**”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서초구(이하“구”**”를 “**서초구(이하 “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를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를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지급대상)**”을 “**(신고 및 지급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을 “**신고자는 공무원등**”으로, “**하는 경우**”를 “**하였을 경우**”로, “**신고한 자로서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로 한다**”를 “**신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고기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부조리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조리 행위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의한 신고**”를 “**다른 신고**”로, “**서식에 의한**”을 “**서식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를 “**성명·생년월일·주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있어서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 진위여부**”를 “**다른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로, “**요구 할**”을 “**요구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을 “**완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보상금 지급대상 선정 결정)**”을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려하여야한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9조의 제목 “**(보상금의 지급)**”을 “**(보상금 지급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를 “**보상금은 신고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신고 된**”을 “**신고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지되어**”를 “**인지하여**”로 한다.

제11조 중 “**의한**”을 “**다른**”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13조 중 “**대하여**「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의거”를 “**대하여**「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부 조 리 신고서(제5조 관련)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전화번호)		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비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u>구현하는데</u>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구현하는 데</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u>서초구(이하 “구”라 한다)</u>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생략) 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u>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u>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u>구청장이</u>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u>중 「공직</u>	제2조(정의) ----- -----. 1. ----- -----. 가. ----- <u>서초구(이하 “구”</u> ----- ----- 나. (현행과 같음) 다. ----- ----- <u>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u> ----- ----- 라. <u>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 ----- <u>중 「공직자</u>

「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 3. (생략)

4.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
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8조에 따라 선정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서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
여한 자로 한다.

1. ~ 4. (생략)

<신설>

제4조(신고 및 신고기한) ① 제3
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누구든
지 할 수 있으며,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윤리법」 제3조의2-----

2. ·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3조(신고 및 지급대상) ① 신고
자는 공무원등-----
----- 하였
을 경우--- 신고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사
람에게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
라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신고기한) ① 제3조제1항
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부조리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
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
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하고 제1항의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7년, 1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1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신고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제출 또는 구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 5. (생략)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조리 행위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신고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신고----- 서식으로 -----

--- 긴급하거나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구청장-----

-----.

1. 성명·생년월일·주소 ----

2. ~ 5. (현행과 같음)
6. -----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과 신고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심의위원회) 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2. (생략)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1항

----- 필요한 -----

② ----- 따른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

----- 요구 할 -----.

③ -----
----- 완 료-----
----- . -----

-----.

제7조(보상금심의위원회) ① ---

----- 서울특별시 서 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1. 2. (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한다.

제8조(보상금 지급대상 선정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 이라 한다) 지급에 대한 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② 위원회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9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0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8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

----- 고려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보상금 지급방법) <삭제>

① 보상금은 신고인-----

-----.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보상금 지급 제외) -----

-----.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
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생 략)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
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4. · 5. (생 략)

제11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0조에 의한 보
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
금과 제재부가금 및 이자를 환
수하며, 환수방법은 「공공재
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
다.

제12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
청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과 신고·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
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3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
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

1. -----
---- 신고된 ----

2. (현행과 같음)

3. -----
-- 인지하여 -----

4. · 5. (현행과 같음)

제11조(환수) -----
----- 따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
률」에 ----.

제12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
----- 사
람의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
----- 대
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

「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지】

부조리 신고서(제5조 관련)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역		연 락 처	
	관 부 처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전화번호)		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비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규정」에 따라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부 조 리 신고서(제5조 관련)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전화번호)		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비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